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「산림 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조～제4조)

나.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정함 (안 제5조)
- 숲속의 집 : 15:00~다음날12시, 야영장 : 10:00～ 다음날 10시

다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사항을 정함(제6조)
- 성수기11만원 비수기6만원, 야영장 : 6천원

라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(납부)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)
-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

마.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수급자, 65세 이상 등

바.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9조)
- 기상재해로 사용불가 시, 관리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시

사. 휴양림시설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-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- 실비보상

아. 휴양림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물품판매, 애완동물 등

자. 휴양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- 취객행위, 고성방가, 지정 장소 외 취사행위 등

차. 휴양림 이용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)
- 개보수시, 운영상 필요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(붙임 1 참조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 2 참조)

다. 기타

(1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2) 입법예고(2013. 10. 24~11. 13) : 별도 의견 없음4. 참고사항

5. 검토의견

❑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

○ 금년말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준공됨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 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.

❑ 제정 조례안은

○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용시설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, 이용 시간, 사용료 징수, 사용료 면제 및 감면· 반환사항, 변상책임,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, 이용의 통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다만 제8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등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민이 본 시설을 이용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❑ **본 조례안은** 상위법인 산림 문화· 휴양에 관한 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